

비료생산업 []폐업, []휴업 신고서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☐ 폐업: 즉시 ☐ 휴업: 7일
신고인	법인(상호)명	비료생산업 등록번호	
	성명(대표자)	생년월일	
	주 소	전화번호	
신고내용	폐업일	년 월 일	
	휴업기간	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(일간)	
	폐업 또는 휴업의 사유		

「비료관리법」 제11조제4항·제5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·제5항,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·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비료생산업의 []폐업, []휴업을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 (서명 또는 인)

특별자치시장, 특별자치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첨부서류	비료생산업 등록증 ※ 폐업을 신고하려는 자가 등록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하단의 분실사유를 적고 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	수수료 없 음
	비료생산업 등록증 분실사유:	